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4
----------	-----

2022년 9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22년 8월 29일
- 다.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 라. 상정일 :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9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개관일자 : 2002.09.01
  - 시설규모 : 대지 1,762㎡, 건물 4,986㎡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3년(2023.1.1 ~ 2025.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498백만원(20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51백만원, 사업비 1,599백만원, 물건비 550백만원, 경상이전비 156백만원, 자본지출 311백만원, 사업외 지출 1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온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운영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개관일자 : 2002.09.01
- 시설규모 : 대지 1,762㎡, 건물 4,986㎡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2023.1.1 ~ 2025.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3,498백만원(2022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이하 '본 센터')는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시설로,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본 민간위탁동의안(이하 '본 동의안')은 본 센터를 수탁하여 온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하 '청소년연맹')의 재위탁(3년) 및 재계약(2년)을 거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민간위탁 기간(5년)의 만료(2022.12.31.)가 도래하여, 공모를 통해 새로운 위탁기간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 1차 2002.06.01.~2005.05.31.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신규위탁)
- 2차 2005.06.01.~2008.05.31.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계약)
- 3차 2008.06.01.~2011.08.31 (사)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재위탁)
- 4차 2011.09.01.~2013.06.30.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재계약)
- 5차 2013.07.01.~2016.06.30.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재위탁)
- 6차 2016.07.01.~2018.02.22.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재계약)
- 7차 2018.02.23.~2020.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재위탁)
- 8차 2021.01.01.~2022.12.31.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본 센터는 지하2층, 지상 4층 건물에서, 1부 5팀, 총 27명이 교육문화사업, 생활체육사업(수영교실, 튼튼gym, 스마트333, 전환기 청소년특강), 학교연계사업(희망틈새학교, 자원봉사활동, 전환기 청소년특강), 진로·체험(차산업 프로그램, 홈트레이닝, 전통체험, 인성교육), 마을 플랫폼사업(착한성장 프로젝트, 구로청소년댄스 축제, 지역사회활동가 지원사업 등), 청소년 이지트, 다문화청소년지지·기반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 110여개의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음.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단기근로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0	0	0	0
현원	27	15	1	0	1	2	2	2	6	0	1	12	12	0	0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

구분	시설명 (용도)
지하2층	탈의실(탈의/샤워장), 수영장(유아풀, 성인풀), 기기제어실, 의무실
지하1층	여자탈의실/샤워장, 발전기실, 전기실, 소극장, 에어로빅실,
1층	주차장, 프로그램실,
2층	프로그램실(4개), 사무실, 관장실, 휴카페
3층	청소년전용공간, 프로그램실
4층	소체육관, 피아노실, 예체능공간

○ 본 동의안은 본 센터의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2023.1.1.~ 2025.12.31.)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35억원 규모(3,498백만원)로 편성하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학교연계 수업,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단체\*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음.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제15953호, 2005.4.8.)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이 입지한 지역은 서울의 서남권으로,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비교적 많이 분포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 제공, 운용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관련 조례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나, 단순 사실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 행정능률 제고, 예산의 효율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유학기제의 시행 및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등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센터의 청소년 이용률이 낮은 상황인바, 청소년의 본 센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센터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개선·개발하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2021년 운영평가 중 총평 발췌)되고 있으나,
  -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확대 요구 등의 여건이 있으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이용률 현황 〉

A. 청소년 시설이용률 =  $\frac{\text{청소년 이용자수}}{\text{시설 전체 이용자수}} = \frac{75,438}{86,592} = 87.1\% = 1.74\text{점}$

B. 청소년 프로그램 비율 =  $\frac{\text{청소년 프로그램수}}{\text{시설 전체 프로그램수}} = \frac{98}{112} = 87.5\% = 1.75\text{점}$

C. 청소년 이용자 목표 달성률 =  $\frac{\text{청소년 실제 이용자수}}{\text{청소년 이용자 목표인원}} = \frac{75,438}{81,230} = 92.9\%$

- 본 센터는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은 27명으로 적정 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원의 절반 수준의 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법인의 전문성이 청소년활동에 반영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본 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정규직 운영을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조직현황 〉

구분	총계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달기료	기타
정원	28	28	1	1	1	3	4	7	6	3	2	0	0	0	0
현원	27	15	1	0	1	2	2	2	6	0	1	12	12	0	0

- 결론적으로,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비전문성 및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본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로 침체된 청소년센터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부수적으로 본 센터는 2017년 공익제보를 통해 ‘이전 수탁기관(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의 비위(횡령 등)가 밝혀져,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의 해임요구 및 위탁계약 해지통보(2017.9.22.) 후 비상체제로 운영한바 있음.

- 현 위탁기관(사단법인 청소년연맹)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내고 있어,
  - 청소년시설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7년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비위 관련 조사경위 및 결과 >**

○ 2017.6.15. 구로수련관 비위사실 市 조사담당관에 <b>공익 제보(익명)</b>
○ 2017.6.21. 조사실시 : 구로수련관 운영실태 조사(조사담당관)
○ 2017.9.06. 수사의뢰 : 市 조사담당관 → 관할 경찰서
○ 2017.9.22. 환수요청 : 202,950천원(청소년정책과→교화연합회(위탁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자 조치(관장, 운영부장, 업무지원팀장, 생활체육팀장) 해임(7.12)</li> <li>- 위탁법인(교화연합회) 위탁계약 해지 통보</li> </ul>

**< 2021년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운영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점
1. 운영기반	1.1. 운영전략 관리	10.00	7.29
	1.2. 조직 및 인력 관리	12.00	11.73
	1.3. 재정 및 자원 관리	13.00	12.53
2. 사업운영	2.1. 프로그램 개발	5.00	5.00
	2.2. 사업운영 관리	15.00	15.00
	2.3. 대외협력	10.00	9.00
3. 사업성과	3.1. 사업운영 실적	15.00	14.49
	3.2. 지역사회 기여도	10.00	10.00
	3.3. 만족도 관리	10.00	10.00
※ 가·감점	A. 가점	5.00	5.00
	B. 감점	-5.00	-1.50
<b>총 점</b>		<b>100.00</b>	<b>98.54</b>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4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구로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개관일자 : 2002.09.01
- 시설규모 : 대지 1,762m<sup>2</sup>, 건물 4,986m<sup>2</sup>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체육관, 수영장,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3.1.1 ~ 2025.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498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51백만원, 사업비 1,599백만원, 물건비 550백만원, 경상이전비 156백만원, 자본지출 311백만원, 사업외 지출 1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1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이문정 (☎ 2133-4124)